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통행정기관 등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3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 조문 위치 변경 필요(안 제23조의2)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부 시·도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 분산하여 시행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해당 개정규정을 제4장(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1)에

1)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22조 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24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제25조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신설하고 있는데, 내용 상 관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4장은 교통시설의 정비(제22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제23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제24조),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제25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제26조), 교통시설의 유지(제27조) 등 국가에게 교통안전·교통수단·교통시설 등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개정안 제23조의2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교육대상, 교육 면제, 교육 위탁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은 국가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규정이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²⁾을 규정한 제5장에 위

제26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제27조 교통시설의 유지
제28조 위험물의 안전운송
제29조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제30조 손해배상의 적정화
제31조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32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2)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33조 교통수단안전점검 제33조의2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제35조 제35조의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6조 제37조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8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제39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제51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제52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53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4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54조의2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

치하도록 조 번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3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성 희)

제41조 결격사유	제55조의3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제56조의2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44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5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제46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57조의2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제49조 교통사고의 조사 등	